

힘이되는 평생친구, 보건복지부



질 병 관 리 본 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지카바이러스감염증 의심환자 신고 철회

1. 관련근거

- 가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
- 나. 감염병의 진단기준(질병관리본부 고시 2016-2호)

2. 최근 국외에서 지카바이러스감염증 발생건이 확산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의심환자 신고가 증가하고 있으며, 감염병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**감염병 의심(확진)환자***를 진단한 모든 의료기관은 반드시 지체없이 「별지제1호서식」을 통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* 의심증상이 있는 의심(확진)환자는 법률 제11조에 의한 신고대상임

3. 이에 귀 협회 회원 및 지역의사회를 통해 지카바이러스감염증 의심환자 발견 시 지체없이 신고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지카바이러스감염증 진단신고기준 1부. 끝.

질병관리본부장



수신자 대한의사협회, 대한병원협회

보건연구사 **박숙경** 감염병감시과 전결 2016. 7. 4.
장 **이동한**

협조자

시행 감염병감시과-1399 (2016. 7. 4.) 접수

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 / http://
리본부 감염병감시과

전화번호 043-719-7165 팩스번호 043-719-7188 / monica23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위험할 땐 119, 힘겨울 땐 129